1 지정 개요

□ **목적**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 시 지원내용**

○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주요 심사사항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해양수산 분야(「해양수산부 직제 참고」)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⑤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다.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ㅇ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ㅇ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함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사.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취소·반납 3년 경과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지정기간과 합산하여 지정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3 지정절차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공고		❶신청·접수		❷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❸심사·선정		❹지정·공고
해양수산부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해양수산부 (심사위원회)	⇒	해양수산부
6.29.		6.29.~7.24.		7월~8월		8~9월		9월

1. 신청 및 접수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29.(월) ~ 2026. 7. 2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①기업 회원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성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661-4006 (대표번호))

2. 현장실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이 각 부처 의뢰를 받아 현장실사 진행

-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지정심사 및 의결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비공개

4. 지정결과 발표

○ 2026년 9월(예정)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에 게시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연락처

1.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 (매년 5월말까지)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제한 또는 지급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해양수산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문의처

○ 해양수산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51-773-5165)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전화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

5 제출서류

1.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호서식> 및 구비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5. 유급근로자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별도 제출
6.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7.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8. 정관·규약 등
   * 정관·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10.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26.7.24.)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붙임1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60일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 (FAX.:) (e-mail:)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 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 종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전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 재활용 □ 환경교육 □ 생태복원 □ 음식물 □ 주거환경 □ 친환경상품 □ 청소 □ 기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별지 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기업만 제출) 11.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2.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 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요건 충족계획

사 회 적 목 적 실 현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 직 형 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 로 자 고 용 계 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의 사 결 정 구 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규 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 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 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table>
<tr><td colspan="2">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사업지역</td><td colspan="8">(　　) 시/도　(　　) 시/군/구</td></tr>
<tr><td rowspan="11">지역
사회
공헌형
㉮</td><td rowspan="2">일자리 제공</td><td colspan="3">전체 근로자(A)</td><td colspan="3">지역취약계층 근로자(B)</td><td>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td></tr>
<tr><td colspan="3">명</td><td colspan="3">명</td><td>%</td></tr>
<tr><td rowspan="2">사회서비스
제공</td><td colspan="3">전체 서비스 수혜자(A)</td><td colspan="3">지역취약계층 수혜자(B)</td><td>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td></tr>
<tr><td colspan="3">명</td><td colspan="3">명</td><td>%</td></tr>
<tr><td rowspan="7">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td><td>구분</td><td>연번</td><td>성명</td><td colspan="3">생년월일</td><td colspan="2">해당 취약계층</td></tr>
<tr><td rowspan="3">근
로
자</td><td>1</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3</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 별지 작성 가능</td></tr>
<tr><td rowspan="3">수
혜
자</td><td>1</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3</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 별지 작성 가능</td></tr>
<tr><td rowspan="2">지역자원
연계현황</td><td colspan="3">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3">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지역
사회
공헌형
㉯</td><td rowspan="2">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td><td>해당분야
수입(A)</td><td>전체
수입(B)</td><td>A/B</td><td>해당분야
지출(C)</td><td>전체
지출(D)</td><td colspan="2">C/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지역
사회
공헌형
㉰</td><td rowspan="2">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td><td>해당분야
수입(A)</td><td>전체
수입(B)</td><td>A/B</td><td>해당분야
지출(C)</td><td>전체
지출(D)</td><td colspan="2">C/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10">「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td></tr>
<tr><td colspan="10">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10">해양수산부장관 귀하</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8">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 비고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사회문제 해결 부분 * 공익적 목적 부분 -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 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 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대표자'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❶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❷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❹ 그 외 고용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해당 자치단체(광역,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해당 자치단체(광역,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26년도 지침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2025년도 지침	'24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941,039	4,796,385	7,368,606	8,165,652	9,200,752
	60%	**1,764,623**	**2,877,831**	**4,421,164**	**4,899,391**	**5,520,451**
2024년도 지침	'2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782,902	4,601,181	6,559,520	7,956,449	8,895,998
	60%	**1,669,741**	**2,760,708**	**3,935,712**	**4,773,869**	**5,337,598**
2023년도 지침	'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2022년도 지침	'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2021년도 지침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 '25.10.17.)**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I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I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I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I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4.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1의2)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 · 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